

광주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54940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54940 판결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소21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조합공동사업법인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8. 9. 5.

판결 선고 2018. 10. 1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소21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주시와 'A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4.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구매에 관하여 그 방법을 전자입찰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나. 위 입찰공고 및 첨부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입찰공고〉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청렴계약제입찰이 시행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5. 입찰보증금 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우리 법인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최저입찰가를 낙찰자로 한다.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4. 2. 17. 입찰가를 49,826,700원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2017. 2. 20.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한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2,491,335원(= 49,826,700원 × 0.05)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3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업체임에도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찰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자신이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계약 체결 이전에 물품의 사전 납품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낙찰자 결정 통지를 하였을 뿐 이를 문서로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낙찰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입찰보증금 지급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이 구두에 의한 통지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 체결 이후의 단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낙찰자 결정 통지가 문서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와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반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체결과 납품·검사,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위 각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는 입찰의 참가에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의 단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 체결 이후의 단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현호

판사항경환

판사장명